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458호

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경미한) 변경 및 재건축
정비구역 지정 /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20-2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-95(2006.3.23.)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분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7조,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9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19.10.16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9년 12월 31일
서울특별시장

I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조서

구 분	연번	자치구	동명	지번	면적 (ha)	기준 용적률	층수	건폐율	추진 단계	사업시행방식	정비유형
기 정	17	금천구	시흥동	220-2	1.0 (9,960㎡)	190%	7	60%	1	재건축사업	전면철거
변 경					1.0 (10,558㎡)						

2. 정비구역 지정(변경) 조서

구 분	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적(㎡)	비 고 (변경사유 등 기재)
신 규	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	금천구 시흥동 220-2번지 일대	10,558.0	-

3.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비 율(%)	비 고
정비기반 시설 등	총 계	10,558.0	100.0	-
	소 계	1,845.0	17.5	-
	도 로	1,505.0	14.3	-
	하수도	340.0	3.2	도로(824.0㎡) 중복결정 면적제외
획 지	소 계	8,713.0	82.5	-
	획지1	8,713.0	82.5	공동주택 부지

4. 용도지역 결정(변경없음) 조서

구 분	면 적(㎡)			비 율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10,558.0	-	10,558.0	100.0	-
제1종일반주거지역	258.0	-	258.0	2.4	-
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10,300.0	-	10,300.0	97.6	-

5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가.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중로	3	12	12	집산도로	808	시흥동 산118	시흥동 230-5	일반	-	1999.5.8	-
신설	소로	2	(A)	6~8	국지도로	175	시흥동 230-114	시흥동 220-2	일반	-	-	하수도중복 결정(824.0㎡)

■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-	도로	소로	시흥동 230-114	• 도로신설 B= 6~8m, L=175	대상지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처리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로 신설

나.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가) 구역내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-	공원	도시자연공원	시흥동 230-114번지 일대	258.0	감)258.0	-	-	-

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-	공원	도시자연공원	시흥동 230-114번지 일대	감)258.0㎡	사업구역 진출입 및 주변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 신설을 위해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일부 해제

나) 구역외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-	공원	도시자연공원	시흥동 산100-1번지 일대	1,955,422.0 (258.0)	감)258.0	1,955,164.0 (-)	1968.1.15	-

※ ()는 구역내 면적

다. 하수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		연장(km)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		기점	종점	주요경과지				
신설	하수도	시흥동 703-78	시흥동 230-7	-	0.15	1,164.0	-	도로중복결정 (824.0㎡)

■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		면적 (㎡)	변경내용	변경사유
		기점	종점	주요경과지			
-	하수도	시흥동 703-78	시흥동 230-7	-	1,164.0	하수도 신설	공동주택부지 중앙에 위치한 하천부지의 현재 기능을 유지하고, 공동주택의 합리적 배치계획을 위하여 구역경계에 면하여 하수도를 신설,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함

6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구분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비고(법정기준)
신설	관리사무소	획지1	100.0	$10\text{㎡} + (\text{세대수} - 50) \times 0.05 = 19.25\text{㎡}$ $10\text{㎡} + (235\text{세대} - 50) \times 0.05 = 19.25\text{㎡}$
신설	경비실	획지1	50.00	-
신설	경로당	획지1	145.0	$50\text{㎡} + \text{세대당 } 0.1\text{㎡}$ 를 더한 면적 $50\text{㎡} + (235\text{세대} \times 0.1) = 73.50\text{㎡}$
신설	어린이놀이터	획지1	450.0	$200\text{㎡} + \text{세대당 } 1\text{㎡}$ 를 더한 면적 $200\text{㎡} + (235\text{세대} \times 1) = 435.00\text{㎡}$
신설	주민복지시설	획지1	180.0	-

※ 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”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「건축법」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

7.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 계획

구분	구역 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정비개량계획(등)				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계	준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
신규	시흥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10,558.0	획지1	8,713.0	시흥동 220-2번지 일대	4	-	-	4	-	-

8. 건축시설계획

■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된 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	높이 (m) (최고층수)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정비계획	법적상한		
신규	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10,558.0	획지1	8,713.0	시흥동 220-2 일대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60% 이하	228% 이하	미적용	43m이하 (최고13층이하)	-
■ 총세대수 : 235세대 ■ 전체 건립규모(전용면적 기준)								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			건 립 규 모		세 대 수		비 고	
						합 계		235세대 (100.0%)		전용면적 85㎡이하 규모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: 100%	
						전용60㎡이하		175세대 (74.5%)			
						전용60㎡~85㎡이하		60세대 (25.5%)			
						전용85㎡초과		-			
※ 임대주택건설 : 0세대											
심의완화 사항	■ 총수완화 :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 ⇨ 평균11층이하 -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1항 다목에 따라 총수완화 대상지역 면적의 10% 이상(10.62%) 기부채납										
	■ 용적률 완화 -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6% 적용(지능형 건축물 4등급)			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	■ 건축한계선 지정 - 아래와 같이 건축한계선을 지정, 대상지 남측 신설도로변(폭2m)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대상지 서,북측 구역 경계부(폭1~15m)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공지는 비오톱 유형1등급지로 보전										
	구분		건축선 지정 내용								비고
	획지1		- 대상지 남측 신설도로변(폭2m) 지정 - 대상지 서,북측 구역 경계(폭1m~15m) 지정								도면참고

※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

■ 용적률 계획

구분	산정내용				
토지이용계획	계(구역면적)	획지(공동주택등)	신설정비기반시설	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,공유지	획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,공유지
	10,558.0㎡	8,713.0㎡	1,845.0㎡	333.0㎡	390.0㎡
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(순부담)	•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-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-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$= 1,845.0㎡ - 333.0㎡ - 390.0㎡ = 1,122.0㎡$				
계획(기준)용적률	• 계획(기준)용적률 = 190%				
허용용적률 (사업별 인센티브 항목 적용)	• 허용용적률 = 기준용적률 + 인센티브(최대 20%) = 190% + 6% = 196% • 인센티브 = 6% [지능형 건축물 4등급(6%)]				
상한용적률 (개발가능용적률)	•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•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과의 「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(2019.1.16.)」 적용 $\begin{aligned} &\text{개발가능용적률} \\ &= \text{허용용적률} \times (1+1.3a) \\ &= 196\% \times (1 + 1.3 \times 0.1287) \\ &= 228.79\% \text{이하} \end{aligned}$				
법정상한용적률	$\begin{aligned} &\text{• } a = \text{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} / \\ &\quad \text{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} \\ &= 1,122.0 / 8,713.0 \\ &= 0.1287 \end{aligned}$				
	• 미적용				

①기준용적률	항목	인센티브	적용 여부	③허용용적률 (①+②)
190%	우수디자인	15%	-	196%
	장수명주택	10%	-	
	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	• 에너지 1, 녹색 최우수	12%	
		• 에너지 1, 녹색 우수	8%	
		• 에너지 2, 녹색 최우수	8%	
		• 에너지 2, 녹색 우수	4%	
	신재생에너지	• 20% 초과	3%	
		• 20% 이하 ~ 15% 초과	2%	
		• 15% 이하 ~ 10% 초과	1%	
	지능형건축물	• 1등급	15%	
		• 2등급	12%	
		• 3등급	9%	
		• 4등급	6%	
	역사문화보존	•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정 등(위원회 인정)	5%	
②인센티브 적용 계		6%		최대 20% 이내

■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: 해당없음

-이하 여백-

9. 도시경관, 환경보전,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
가. 도시경관,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
도시경관	•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•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	-
환경보전	자연환경 • 절·성토의 균형고려, 지형변화의 최소화 •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•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(biotop)공간확장 생활환경 •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(LNG)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• 대기환경보전법, 폐기물관리법,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	-
재난방지	수재해 •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산사태 •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,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 화재 •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	-

-이하 여백-

나. 환경성 검토결과

	목표기준	현황 및 검토결과검토항목	계획에 반영사항
1. 생태면적율	30%	• 생태면적율 32.19%로 계획	• 자연지반녹지, 인공지반녹지 적용
2. 녹지네트워크	녹지평가 지표1	• 녹지면적 I, 녹지모양 III, 내부연결성 III, 외부연결성 III	• 생태적연계를 위한 조정녹지 배치하여 환경성검토 녹지평가지표 1을 달성
3. 지형변동	절선토비율 20%미만	• 본 대상지는 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,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갈수록 표고가 높아지는 지형임 •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발생	•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
	지형변동비율 30%미만	•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	•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
	지형변동 최소화	•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	• 지하공간 최소화, 흠마이공법 실시
4. 비오류	3등급	•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대부분 비오류유형평가 4등급으로 조사됨	• 대지면적내 조정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임에 따라 새로운 녹지공간을 형성
5. 일조	연속 2시간 확보	• 대상지 북서측에 금천초가 입지하고 있으며, 북측으로 삼성산이 위치하고 있음	• 건물높이, 배치계획 등의 조절을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
6. 바람 및 미기후	바람길 확보	•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	-
7. 에너지	에너지절약 계획 수립	• 에너지사용량 증가	• 청정연료 사용 •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
	신재생에너지 사용	-	•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검토
8. 경관	Skyline보전	• 본 대상지 주변에 관악산 및 삼성산이 위치한 녹지공간과 근린공원등이 형성되어 경관조망 우수한 지역임	• 인접지역 경관에 위압감 해소를 위해 기준 높이를 적용하여 주변 건물과의 스카이라인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
	조망권 확보	• 주변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	• 합리적인 조경계획수립 및 자연지반 녹지, 인공지반 녹지를 통해 녹지 공간 확보를 비롯한 녹색경관정출을 도모함
9. 휴식 및 여유평간	휴식·여가공간 확대확보	• 대상지는 주변에는 삼성산자연공원이 있음	• 자연·인공지반 등 녹지공간 최대확보
10. 보행 친화공간	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	• 대상지 북쪽으로 삼성산터널 및 삼성산2터널이 있는 탐골로5길(12M)이 접하고 있음	• 대상지 북측12m도로와 기출입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하여 원활한 진출입 및 인근 주민들의 편의성 증진
	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	• 대지면적이 작아,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	-
	자전거보관소 15대/100unit	-	• 단지내 자전거보관소 설치
11. 소음 및 진동	소음환경 기준이하	• 공사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(A) 이상 발생 예상 •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	•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후 공사시행 • 차음설계(창호, 외벽)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
12. 폐기물	건설폐기물 재활용	• 공사시 건설폐재 및 폐유등 발생	•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토록하며, 폐유는 별도 시설에 보관후 전량 위탁처리토록 하겠음

10. 정비사업 시행계획

구분	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		비고
				기존	계획	증	
신규	재건축 정비사업	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	(가칭)시흥현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또는 신탁업자	140	235	95	-

11.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

정비구역 주변 현황	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	비고
남측 탐동초교 및 북서측 금천초교가 입지	• 대상지와 가장 가까운 교육시설은 탐동초등학교로 사업지 남측 경계에 접하고 있음 • 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 제52조(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)에 의거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수립	-

12.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

정비구역 현황	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			비고
	추진위/조합 설립 또는 신탁사 선정 ~ 착공 전	착공 ~ 공사 완료	범죄예방설계 적용	
현재 추진위승인 이전 상태로 주민들 거주중	• 펜스 설치 및 유지·관리 • 1일 오전·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• 방범용 CCTV 설치 운영	• 건설산업기본법, 건설기술진흥법, 건축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•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	•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전이공간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•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•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하여 눈이 부시지 않는 등을 설치	-

13.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및 주민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14.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

- 1) 주택건설 : 235세대
- 2) 수용인구 : 635인(1세대 당 2.7인 기준)
- 3) 주택공급계획

구분		계	조합원분양	일반분양	임대주택	비고
합 계		235	140	95	-	-
60㎡ 이하	소계	235	140	95	-	-
	30㎡이하	-	-	-	-	-
	30㎡초과~50㎡이하	69	-	69	-	-
	50㎡초과~60㎡이하	106	80	26	-	-
60㎡초과 ~ 85㎡이하		60	60	-	-	-
85㎡ 초과	소계	-	-	-	-	-
	85㎡초과~135㎡이하	-	-	-	-	-
	135㎡초과	-	-	-	-	-

※ 현황 세대(140세대)가 추후100% 분양신청 한다는 가정하에 임의산정 하였으며, 추후 관리처분인가시 변경 될 수 있음.

15. 구역내 옛길, 옛물길 등 역사 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: 해당없음

16.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

- 하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경사면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수해에 대비
-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

구분	계획내용
수재해	•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경사가 있는 지형에 위치하고 있어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
화재	• 건축물 건립 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철저 대비 •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• 구역내 화재 발생에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

II.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적(㎡)	비고 (변경사유 등 기재)
신규	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	금천구 시흥동 220-2번지 일대	10,558.0	-
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가.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
구분	면적(㎡)			비율(%)	비고 (변경사유 등 기재)
	기정	변경	변경 후		
합계	10,558.0	-	10,558.0	100.0	-
제1종일반주거지역	258.0	-	258.0	2.4	-
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10,300.0	-	10,300.0	97.6	-

나. 기반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1)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모	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	
기정	중로	3	12	12	집산도로	808	시흥동 산118	시흥동 230-5	일반	-	1999.5.8	-	-
신설	소로	2	(A)	6~8	국지도로	175	시흥동 230-114	시흥동 220-2	일반	-	-	-	하수도중복 결정(824㎡)

2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가) 구역내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-	공원	도시자연공원	시흥동 230-114번지 일대	258.0	감)258.0	-	-	-

■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-	공원	도시자연공원	시흥동 230-114번지 일대	감)258.0㎡	사업구역 진출입 및 주변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 신설을 위해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일부 해제

나) 구역외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-	공원	도시자연공원	시흥동 산100-1번지 일대	1,955,422.0 (258.0)	감)258.0	1,955,164.0 (-)	1968.1.15	-

※ ()는 구역내 면적

3) 하수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		연장(km)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		기점	종점	주요경과지				
신설	하수도	시흥동 703-78	시흥동 230-7	-	0.15	1,164.0	-	도로중복결정(824.0㎡)

■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		면적 (㎡)	변경내용	변경사유
	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			
-	하수도	시흥동 703-78	시흥동 230-7	-	1,164.0	하수도 신설	공동주택부지 중앙에 위치한 하천부지의 현재 기능을 유지하고, 공동주택의 합리적 배치계획을 위하여 구역경계에 면하여 하수도를 신설,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함

3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가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가 구	면 적(㎡)	비 율(%)	비 고
획 지	소 계	8,713.0	100.0	공동주택
	획지1	8,713.0	100.0	공동주택

나.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조서

1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	가 구	용 도	비 고
신규	허용용도	획지1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	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

2) 건축물 개발밀도(건폐율, 용적률, 높이)

가) 건폐율 계획

구 분	지 역	건폐율	비 고
신규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60% 이하	-

나) 용적률 계획

구 분	용 적 률				비 고	
	기준용적률	허용용적률	상한용적률	법정상한용적률		
신규	190% 이하	196% 이하	228% 이하	미적용	정비계획	허용용적률 196% 상한용적률 228% 법정상한용적률 미적용

■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

구 분	인센티브	비 고
	지능형건축물 4등급	
신규	6%	-

■상한용적률 완화 사항

구 분	용적률 완화		비 고
	공공시설 기부채납	소형주택 건설	
신규	1,122.0㎡(10.62%)	-	-

다) 높이 계획

구 분	지 역	높이기준	비 고
신규	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평균 11층 이하	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1항 다목 :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- 평균 7층 이하. 다만, 사업계획부지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 채납 하는 경우 평균 13층 이하

다.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

구 분	적용위치	계 획 내 용
건축한계선	■ 대상지 남측 신설도로변	■ 도로 경계로부터 2m
	■ 대상지 서, 북측 구역 경계	■ 구역 경계로부터 1m ~ 15m

라.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1)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	적용위치	계 획 내 용
전면공지	■ 대상지 남측 신설도로변	■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- 폭원 : 2m
	■ 대상지 서, 북측 구역 경계	■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되는 비오톱 유형 1등급지는 보전 - 폭원 : 1m ~ 15m

2)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	적용지역	계 획 내 용
차량동선계획	■ 대상지 남측	■ 주변도로의 교통소통 저해 방지를 위해 완화차로 및 도시계획도로 신설
보행동선계획	■ 폭 6~8m 신설도로	■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(3개소)
주차계획	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	■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조례 기준이상 주차면수 확보

-이하 여백-

3) 환경관리계획

	목표기준	현황 및 검토결과검토항목	계획에 반영사항
1. 생태면적율	30%	• 생태면적율 32.19%로 계획	• 자연지반녹지, 인공지반녹지 적용
2. 녹지네트워크	녹지평가 지표1	• 녹지면적 Ⅰ, 녹지모양 Ⅲ, 내부연결성 Ⅲ, 외부연결성 Ⅲ	• 생태적연계를 위한 조경녹지 배치하여 환경성검토 녹지평가지표 1을 달성
3. 지형변동	절성토비율 20%미만	• 본 대상지는 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,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갈수록 표고가 높아지는 지형임 •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발생	•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
	지형변동비율 30%미만	•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	•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
	지형변동 최소화	•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	• 지하공간 최소화, 흠막이공법 실시
4. 비오름	3등급	•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대부분 비오름유형평가 4등급으로 조사됨	• 대지면적내 조경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임에 따라 새로운 녹지공간을 형성
5. 일조	연속 2시간 확보	• 대상지 북서측에 금천초가 입지하고 있으며, 북측으로 삼성산이 위치하고 있음	• 건물높이, 배치계획 등의 조절을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
6. 바람 및 미기후	바람길 확보	•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	-
7. 에너지	에너지절약 계획 수립	• 에너지사용량 증가	• 청정연료 사용 •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
	신재생에너지 사용	-	•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검토
8. 경관	Skyline보전	• 본 대상지 주변에 관악산 및 삼성산이 위치한 녹지공간과 근린공원등이 형성되어 경관조망 우수한 지역임	• 인접지역 경관에 위압감 해소를 위해 기준 높이를 적용하여 주변 건물과의 스카이라인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
	조망권 확보	• 주변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	• 합리적인 조정계획수립 및 자연지반 녹지, 인공지반 녹지를 통해 녹지 공간 확보를 비롯한 녹색경관창출을 도모함
9. 휴식 및 여유평간	휴식·여가공간 최대확보	• 대상지는 주변에는 삼성산자연공원이 있음	• 자연·인공지반 등 녹지공간 최대확보
10. 보행 친화공간	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	• 대상지 북측으로 삼성산터널 및 삼성산2터널이 있는 탐골로5길(12M)이 접하고 있음	• 대상지 북측12m도로와 기충입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하여 원활한 진출입 및 인근 주민들의 편의성 증진
	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	• 대지면적이 작아,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	-
	자전거보관소 15대/100unit	-	• 단지내 자전거보관소 설치
11. 소음 및 진동	소음환경 기준이하	• 공사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(A) 이상 발생 예상 •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	•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후 공사시행 • 차음설계(창호, 외벽)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
12. 폐기물	건설폐기물 재활용	• 공사시 건설폐재 및 폐유등 발생	•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토록하며, 폐유는 별도시설에 보관후 전량 위탁처리토록 하겠음

4)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: 해당없음

□ 2019년 서울시 제16차('19.10.16.)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: 수정가결

구분	심의결과	내용	초치계획	비고
서울특별시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	수정 가결	1. 용적률(기준 190%, 허용 196%, 상한 228%), 공공기여(도로, 수도 1,120㎡, 순부담 10.62%), 높이계획(최고13층, 평균11층이하), 세대수(전체235세대), 대지조성계획(+45m, +48m, +51m), 도로계획(경사도 등) 등은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	심의(2019.10.16.)상정안으로 계획안 수정하였음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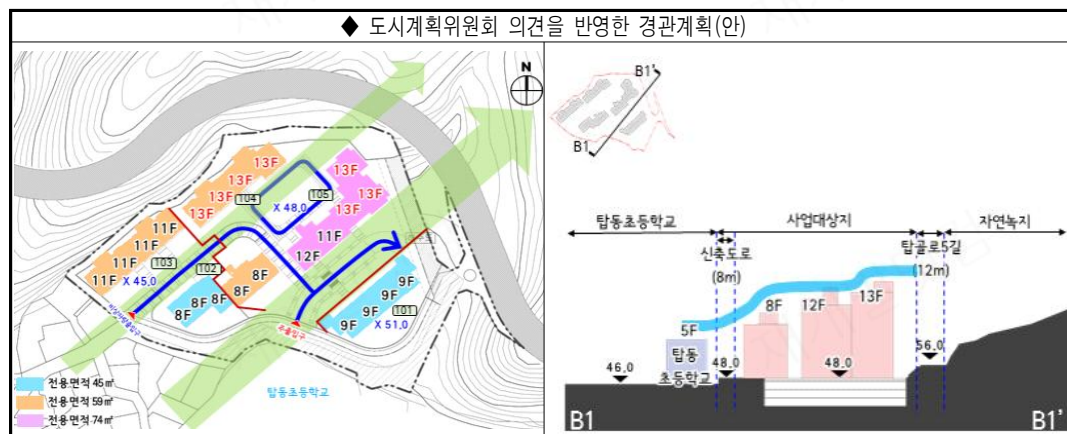
구분	심의결과	내용	조치계획	비고
		2. 대상지는 '주요산(관악산) 주변 중점경관 관리구역' 인바,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대상지 일대 경관상의 부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배치 계획 및 스카이라인 계획 관련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것	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겠음.	

□ 경관계획

구분	내용	조치계획
서울특별시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	- 대상지는 '주요산(관악산) 주변 중점경관 관리구역' 인바,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대상지 일대 경관상의 부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배치 계획 및 스카이라인 계획 관련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것	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겠음.

1)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

구분	적용위치	계획내용
건축물의 방향성	-	■ 삼성산의 조망을 가리지 않는 조망축 확보 ■ 대지레벨에 순응하는 방향을 갖도록 건축계획
건물 진출입구	-	■ 신설도로 2-(A)로변으로 건물 진출입구를 1개소 이상 확보



III. 관련도면 : 붙임 참조

1. 정비예정구역 결정도(기정/변경)
2. 정비구역 결정도
3. 용도지역·지구 결정도
4.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/변경)
5. 정비계획 결정도
6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

※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IV.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: 생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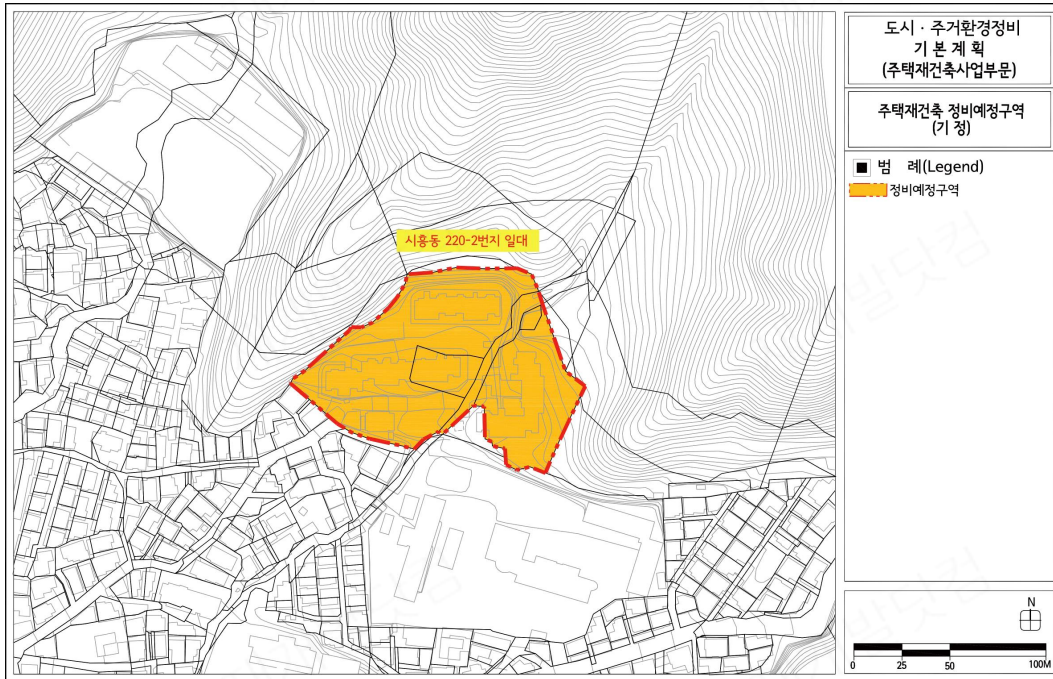
V. 열람장소 :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(☎02-2133-7142), 금천구 주택과(☎02-2627-1615)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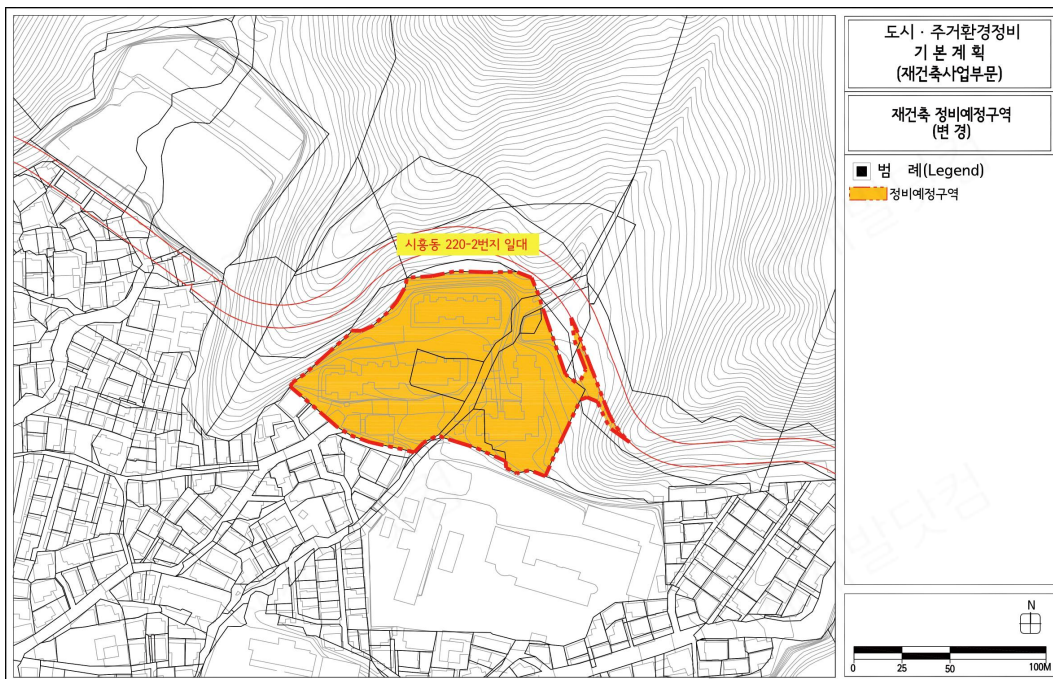
Ⅵ. 재건축 정비구역(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

1. 정비예정구역 결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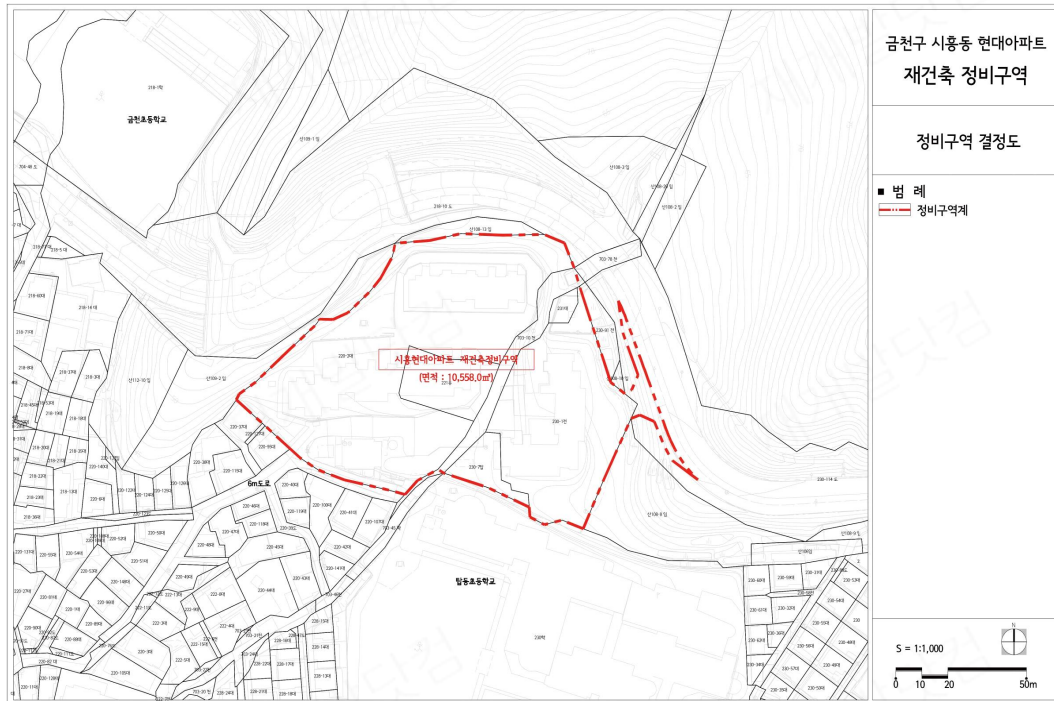
☐ 정비예정구역 결정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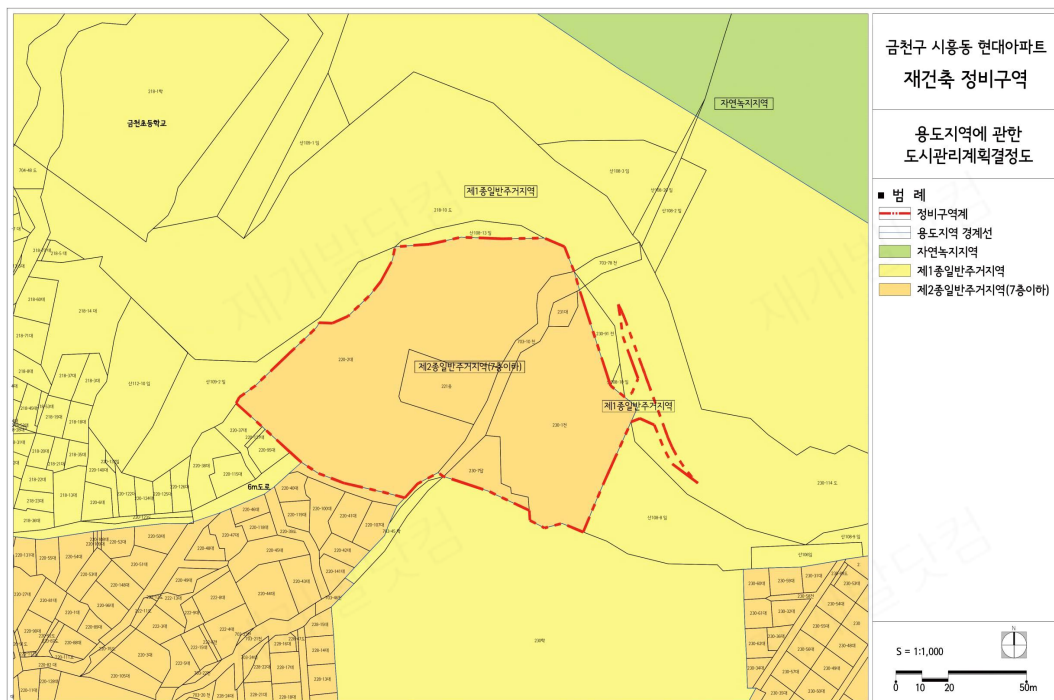
☐ 정비예정구역 결정도(변경)



2. 정비구역 결정도



3. 용도지역·지구 결정도



4. 도시계획시설 결정도

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)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변경)

5. 정비계획 결정도



6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

